

# 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6. 8.19

개정 2018. 9.1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교육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자 혁신적인 교육모델을 연구·개발하고,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한다.

제3조(조직)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에는 필요시 부센터장을 둘 수 있고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, 센터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자문위원회) ① 센터의 전반적인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의 구성은 센터장, 부센터장을 포함하여 교원 6명 이내로 한다.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자문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④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
2. 본 규정 시행 및 센터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

3. 연구 및 개발관련 과제 선정 및 필요한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

4. 포스테키안활동 및 마일리지 규정에 관한 사항

5. 학생봉사활동 인증에 관한 사항

6. 기타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

⑥ 자문위원회 산하에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

제5조(연구원) 센터에는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전임 연구교원 및 연구원, 겸직 연구교원 및 연구원, 객원 연구교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신분과 보수 등에 관한 인사 사항은 본 대학 해당 인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외부자문위원)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(학생조교 및 학생 컨설턴트)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필요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센터의 활동과 효율적인 연결 및 전파를 위하여 학생 컨설턴트를 둘 수 있다.

제8조(준용기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시행세칙 등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, 지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